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5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81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인천□□초등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1. 20.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 5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는 □□초등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위 초등학교장

으로,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2019. 10. 22. 청구인의 ●●●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①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②학생 특별교육 5시간, ③ 부가적 특별교육(학생 3시간, 보호자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0. 28.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2019. 11.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가 서로 놀리고 싸웠다는 것으로 담임교사의 권한으로 학폭위를 개최하고 처분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청구인 부모는 담임교사가 아이들이 싸운다고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교사의 무능이며, 이런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나. 이 사건에서 다친 사람은 같은 반 학생인 ○○○인바, 다친 피해자인 ○○○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피해자 학부모가 학폭위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담임교사가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청구인을 가해자로 징계 처분한 상황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학폭위는 처음부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다친 ○○○만 학교폭력신고를 할 수 있고, 담임교사는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학폭위의 개최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 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인지한 사람은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인지한 담임교사는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직무에 충실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학폭위가 담임교사의 요청으로 개최된 것으로 오해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학폭위의 개최여부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관여한 바는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청구인과 ●●● 학생 간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를 때 신체정신상 피해를 유발한 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담임교사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담임교사가 무능하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쁜 잣대로 대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담임교사의 명예와 교권을 훼손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하게 내린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9. 9. 30. 1교시부터 청구인 ○○○가 교실로 들어올 때 ●●●가 발로 차는 시늉을 내었고, 그러자마자 청구인이 ●●●에게 ‘게임 중독, ‘●●●관(●●●관중)’ 등의 말로 놀리니 ●●●가 자기 물병에 있는 물을 뿌리고, 청구인은 침을 여러 차례 뱉는 행위를 하였다. 그 이후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청구인이 ●●●를 신고하겠다고 112에 전화를 거는 시늉을 내어 ●●●가 화가 났고, 이에 ●●●는 교실에 들어 와서 청구인 책상을 걸어 차고 실내화 주머니로 사물함을 팡팡 내리치고, 교실 문을 황 세게 닫아 이로 인하여 같은 반 아이들이 공포심을 느꼈다. 담임교사와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와 청구인은 계속 서로 놀리고 다투는 행위를 하였다.

2) 그러한 과정에서 같은 날인 2019. 9. 30. 4학년 1반 교실에서 5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에 ●●●와 청구인이 서로 놀리고 싸우다가 ●●●가 화를 내면서 교실로 들어오더니, 흥분이 된 상태에서 문을 세게 닫아 밖에 있던 ○○○이 닫히는 문에 손이 끼게 되어 다쳤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가 서로 놀리고 싸웠다는 것으로 담임교사의 권한으로 학폭위를 개최하고 처분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담임교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른 학교폭력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을 뿐, 담임교사의 권한으로 학폭위를 개최한 사실은 없으므로 담임교사에 의해 학폭위가 개최되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 9. 30. 다친 사람은 ○○○인바, 다친 ○○○이 피해자로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피해자 학부모가 학폭위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담임교사가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청구인을 가해자로 본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학폭위는 단순히 ○○○이 다친 행위를 이유로 개최된 것이 아니라 2019. 9. 30. 1교시부터 시작된 ●●●와 청구인 간의 계속된 싸움 및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같은 반 학생들까지 공포심을 느꼈고, 담임교사 및 학생들이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된 다툼으로 결국 ○○○이 다친 결과를 얻게 된 것으로서 학폭위의 대상은 청구인과 ●●●의 지속적인 폭력 행위 등으로서, 청구인 및 ●●●가 가해자 및 피해자로서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